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담당 : 김두수 국장 : 725-7104, 011-9962-0386)
제 목 노동시민단체 공동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의 건
날 짜 2001. 6. 7. (총 4 쪽)

보 도 자 료

노동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정치관계법 이렇게 바꾸자

주최 :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후원 : 전국민중연대, 대안연대회의
6월 7일(목) 오후 2시~6시, 국회 헌정기념관 103호

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6월 7일(목) 오후 2시, 헌정기념관에서 "정치관계법 이렇게 바꾸자"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선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혁재 박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21세기 정치는 화합과 조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자치와 광범한 직접참여가 보장된 참여민주주의"라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선거법의 개혁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1인 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전국구제도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임명직 국회의원"처럼 운영돼 왔으며, "비례대표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명부작성의 민주화와 비례대표 배분의 봉쇄조항을 "1석 또는 2%이상 득표"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선거구획정 법정주의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월 15일의 여야 합의에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지 않고 국회가 멋대로 선거구를 결정했다가 국민 여론에 밀려 뒤늦게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을 무산시키려 했던 것은 지금의 선거구 획정위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의 부활을 촉구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나치게 정당 위주로 제정됨으로써 정작 주권자인 국민과 일반 사회단체의 권리나 의무는 경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가 이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는 전면 폐기하고, 58조의 사전선거운동기간 제한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등록사퇴시한의 통일”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선거구간 인구편차 축소” “선거공용제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자원봉사제의 개선” “선관위 권한 강화” 등을 주장했다.

2.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송석윤교수(성신여대, 법학)는 “정치자금의 조달방식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면 정치적 참여의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원리는 구두선에 불과하게 된다”며 “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의 평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석윤교수는 정치자금의 문제와 그 원인을 “고비용 정치구조” “동원형 정당구조” “정당구조조정의 장애(사전선거운동 금지)”로 진단했다. 1999년 현재 기존 세 정당의 당원 총수가 6,146,187명(인구수대비 12.97%, 선거인수대비 18.30%)에 이른다며, “동원형 정당구조가 제도권의 모든 정당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의해, “정당들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유권자와는 접촉할 수 없지만 당원들과는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수백만의 당원을 지니고 있는 정당들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신생정당에 속하거나 무소속인 정치지망생에 대하여 특권적인 지위를 향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고비용정치구조의 주요원인인 동원형정당구조를 존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윤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당비납부 제도를 개혁해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교사, 공무원 등), 소액 당비 납부자에 한해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둘째, “법인의 기부금이 정치적인 지지여부보다는 경제적 이권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납부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고액기부자의 명단 및 그 액수를 공개”할 것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기탁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 상한액을 낮추고, 비지정기탁이라고 하더라도 “고액기탁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성명과 액수를 공개” 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직접적 국고보조의 개혁과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는 폐지” 할 것을 제안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정당이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및 정당 스스로 자신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연동하여 액수를 정해야 한다(보조금 총액을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고 주장했다.

또한 기성정당에게 유리한 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해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 표 당 얼마라는 식으로 계산하고, 이에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일정 액수 이하의 당비와 후원금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접적인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상의 자금원 중 가장 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그 지출을 “전액을 정책개발비등 모든 국민과 관련되는 용도로만 지출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다섯째, 후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간접적 국고보조의 개혁 방향에 대해 “법인의 기부금납부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제공하는 기부금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자연인의 정당기부금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기부금의 액수가 평균적인 소득자에게 가능한 한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대화교수(상지대, 정치학)는 “정당의 문제점이 선거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정당과 선거의 문제점이 국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정치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정당의 형성과정과 정당문제의 성격을 진단했다.

정대화 교수는 한국 정당정치에의 결함을 첫째 “진보와 개혁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보수정당체계(sturdy conservative party)”, 둘째 “부수와 수구가 심각한 갈등없이 공존하는 ‘감자부대정당(potato-sack party)”, 셋째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운영되는 과두정당(oligarchical party)”, 넷째 “보스정당 및 휘발성정당(one-man, unstable, volatile party)” 등 네 가지로 진단하였다.

정대화 교수는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정당개혁의 방향을, ①이념과 노선, 정책의 동질성에 기초한 근대적 정당, ②민주주의의 내적·외적 확장을 지향, ③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중정당 지향 등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당개혁의 절차와 관련해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존중하되 정당의 반대로 정치관계법 개정이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 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당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①당내 의사결정구조의 제도화, ②공직후보 공천과정의 민주화, ③당원의 당비에 기초한 정당 운영, ④국고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엄격한 감시, ⑤중앙당과 지방당의 균형적 관계 재정립, ⑥지구당의 활성화, ⑦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의 실현 등을 지적했다.

4. 이날 사회는 박동진교수(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고려대 연구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박상천(민주당 정치개혁특위장), 강재섭(국회정치개혁특위장, 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임명재(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 김태일(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정식(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